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	---	---	---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개 황	1
II.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1. 일반회계	1
가. 세 입	1
나. 세 출	2
(1) 총 괄	2
(2) 이·전용	3
(3) 이 월	4
(4) 불 용	5
2. 예비비 지출	6
3. 재무결산	6
가. 재정상태 분석	6
나. 재정운영 분석	8
다. 순자산변동 분석	10
III. 검토의견	12
1. 총괄 검토	12
가. 개 요	12
나. 「과거사정리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시까지 진실규명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4

2. 진화위운영(1031-300)	17
가. 개 요	17
나. 유해발굴지 선정에 있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	18
다. 「국가재정법」과 예산 총칙을 위반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3
라. 부실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연도 들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7
3. 진화위기본경비(7002-250)	31
가. 개 요	31
나. 예산 비목의 용도를 위반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32

I. 개 황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II.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3,000만원¹⁾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함.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	30	30	0	0	100.0
합 계	-	30	30	0	0	100.0

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 29,527,940원

나. 세 출

(1) 총 괄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었음. 세출예산현액은 193억 5,000만원이었고, 예산현액 대비 85%인 16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8,100만원, 불용액은 16억 1,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이체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C)	B/A (%)	C/A (%)
본예산	추경										
19,077	19,077	-	273	-	±480	19,350	16,456	1,281	1,614	85.0	8.3

동 세출예산은 ‘진실화해위원회 운영’과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운영 단위사업(진화위운영 세부사업 1개)이,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 및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3회계연도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9,077	19,077	273	±480	19,350	16,456	85	16,749
1000 진실화해위원회 운 영 계	7,029	7,029	273	-	7,302	4,528	64.4	3,429
1031 진 화 위 운영	7,029	7,029	273	-	7,302	4,528	64.4	3,429
진 화 위 운영 (1031-300)	7,029	7,029	273	-	7,302	4,528	64.4	3,429
7000 진실화해위원회 행 정 지 원 계	12,048	12,048	-	±480	12,048	11,928	99.0	13,320
7001 진 화 위 인 건 비	6,094	6,094	-	480	6,574	6,537	107.3	6,520
진 화 위 인 건 비 (7001-150)	6,094	6,094	-	480	6,574	6,537	107.3	6,520
7002 진 화 위 기 본 경 비	5,954	5,954	-	△480	5,474	5,391	90.5	6,800
진 화 위 기 본 경 비 (7002-250)	5,954	5,954	-	△480	5,474	5,391	90.5	6,800

(2) 이·전용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추가 소요²⁾가 발생하여 4
억 8,000만원을 전용³⁾함.

2)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별정직, 전문임기제) 경력 반영 등에 따라 직급별 연봉 및 호봉의 평균
단가 차이가 발생하여 보수 실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었음.

3)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 내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진화위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부터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진화위인건비 세부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전용함.

(3) 이 월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12억 8,100만원으로, 계약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계약 11건이 사고이월되어 발생하였음.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 OTT특화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의 경우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23.7.)하였으나 중간보고회 후 제작 기간 추가 필요에 따라 사업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

20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의 경우 발굴 대상지로 권고된 지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 토지사용 승낙을 7월 완료 후 조달청 경쟁입찰 실시,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체결('23.8.)이 지연되었으며, 2023년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역시 조달청 경쟁입찰 실시,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절차 지연으로 계약 체결('23.9.)이 지연되었음.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증언채록 용역은 사업계획 수립('23.9.) 후 조달청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제안서 평가 등 절차가 지연되어 계약 체결이 '23.12월에 이루어지고 '24.1월에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서울시립 여성수용시설 입수자료 분석 용역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수립 후('23.9.) 조달청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23.12월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24.1월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1,281	• 계약기간 미도래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용역계약 11건 사고이월
진화위운영 (1031-300)	1,260	•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 OTT특화 다큐멘터리 제작 (81)
		• 3·15의거 위상 및 가치 재조명 연구 용역 (17)
		• 2023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 (355)
		• 2023년 세종추모의집 보관 유해의 유전자 시료채취 용역 (117)
		• 2023년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308)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부작업 및 특성 분석 (18)
		• 재일교포 북송사건 연구용역 (20)
		•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증언채록 용역 (148)
		•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 구술채록 용역 (146)
		• 서울시립 여성수용시설 입수자료 분석 용역 (50)
진화위기본경비 (7002-250)	21	• 화해모델 및 진실·화해재단 설립방안 연구

(4) 불 용

불용액은 16억 1,400만원으로 용역계약 체결 시 발생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음.

2. 예비비 지출

2023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

3. 재무결산

진실화해위원회 재무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편성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2023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자산은 42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35억 2,600만원보다 7억 6,60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임차보증금 만기연장에 따른 비유동 대체 등의 영향으로 유동자산이 4억 1,700만원 감소하고 감가상각 등으로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 각각 3억 600만원 및 9,6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임차보증금 대체로 기타비유동자산이 15억 8,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채는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5,400만원보다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퇴직금 지급대상자 근속연수 증가 등으로 장기충당부채가 5,6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41억 8,200만원으로 전기 대비 7억 1,000만원 증가함.

[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자산(a)	4,292	3,526	766	21.7
· 유동자산	1,514	1,931	-417	-21.6
· 투자자산	-	-	-	-
· 일반유형자산	765	1,071	-306	-28.6
· 무형자산	428	523	-95	-18.2
· 기타비유동자산	1,585	-	1,585	-
II. 부채(b)	110	54	56	103.7
· 유동부채	-	-	-	-
· 장기차입부채	-	-	-	-
· 장기충당부채	110	54	56	103.7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4,182	3,472	710	20.4

※ 2023(A) : 2023년 12월 31일자 잔액, 2022(B) : 2022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 종류에 대한 설명]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2023년도 위원회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35억 9,600만 원에 관리운영비 130억 4,900만 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3,000만 원을 차감한 166억 1,500만원임.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가 자
 치단체보조비 및 연구개발용역비 등 증가로 전기대비 12억 7,300만
 원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인건비가
 전기대비 9억 500만원 증가하고 임차료 등 기타경비가 7억 3,600만
 원 증가하여 전기대비 16억 4,100만원 증가함. 비배분수익은 지출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전기대비 3,000만원 증가함.

[2023년도 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3,596	2,323	1,273	54.8
가. 프로그램 총원가	3,596	2,323	1,273	54.8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3,049	11,408	1,641	14.4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30	-	30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6,615	13,731	2,884	21.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6,615	13,731	2,884	21.0

※ 2023(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위원회의 순자산은 2023년 말 기준 4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34억 7,200만원보다 7억 1,000만원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재원의 조달은 174억 7,200만원으로 국고수입 31억 2,1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33억 1,5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및 정부내자산기부 증가로 전기대비 7,9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73억 2,500만원으로 전기대비 32억 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66억 1,500만원으로 전기대비 28억 8,400만원 증가하여 당기 기말 순자산은 41억 8,200만원임.

[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3,472	3,113	359	11.5
II. 재정운영결과	16,615	13,731	2,884	21.0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7,325	14,089	3,236	23.0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4,182	3,472	710	20.4

※ 2023(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진실화해위원회의 월평균 사건처리 건수에 비추어 볼 때, 2024년 6월말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8,144건의 사건이 진실규명활동 기한인 2025년 5월말까지 모두 완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법률 제17392호, 2020. 6. 9.,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 진실규명 조사대상 선정, 조사개시결정, 조사 진행, 진실규명 결정 등 진실규명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진실화해위원회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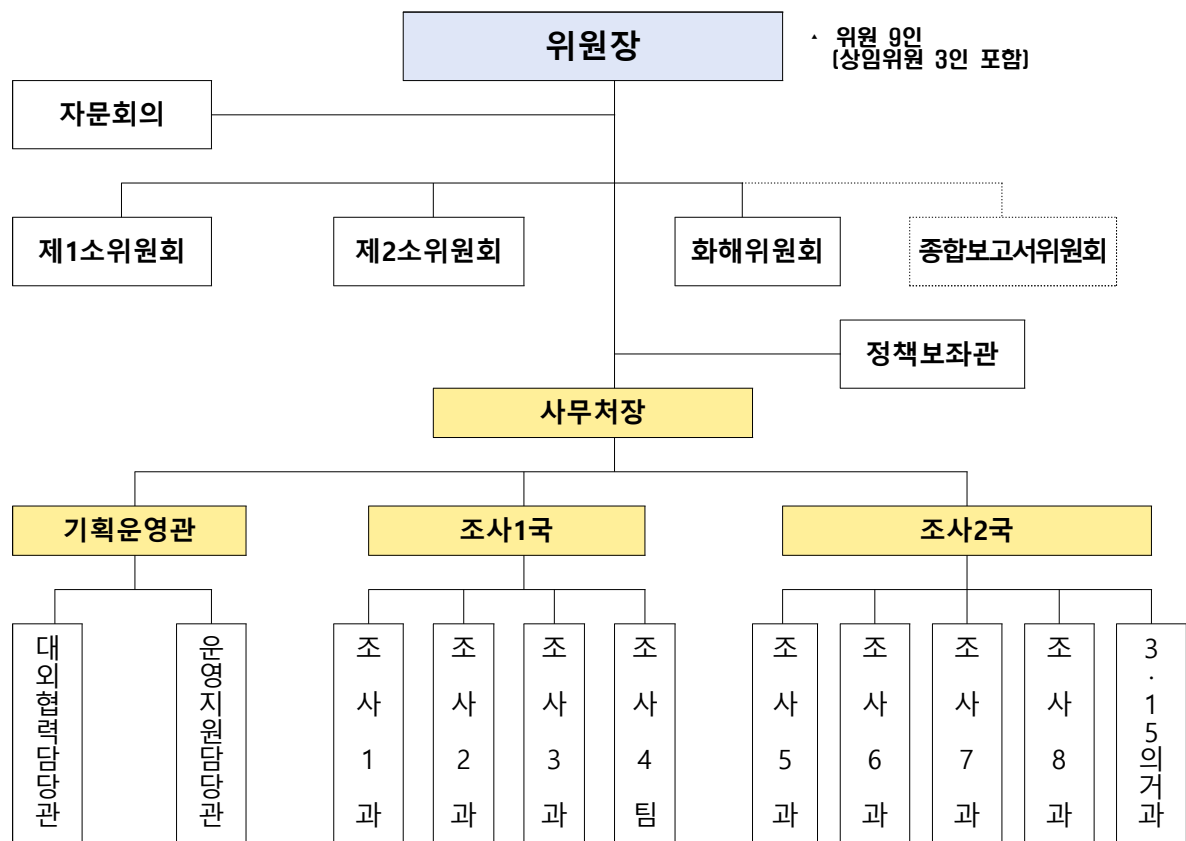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3,741	19,077	16,749
진화위인건비	5,251	6,094	6,520
진화위기본경비	5,924	5,954	6,800
진화위운영(사업비)	2,566	7,029	3,429
· 위원회 홍보	437	660	468

· 진실규명 공동수행	544	1,504	500
· 진실규명 조사(집단희생·인권침해 등 사건, 3·15의거 사건 진실규명 조사)	972	2,479	1,256
·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조사	613	2,386	1,205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원회는 9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6월 말 현재 현원은 227명임.

[진실화해위원회 조직 및 인원 현황]



(단위: 명)

계 (총원/현원)	정원 내 (136/134)			정원 외 (93)			
	정무직	별정직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전문임기	사무보조
229/227	3/3	78/76	55/55	42	7	23	21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나. 「과거사정리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시까지 진실규명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4)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진실규명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5)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3·15의거의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함.

□ 2024년 6월말 현재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진실규명조사를 위하여 배정된 총 사건수는 2만 744건으로, 진실규명결정 등이 이루어져 종결된 사건은 1만 2,600건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8,144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진상규명)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명, '24.6.30.기준)

구분	신청 건수	배정 ¹⁾ 건수	검토 중	상정 중	조사 진행중 사건			종결사건				
					조사 개시	직권 조사	사전 조사	진실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²⁾
계	20,245	20,744	54	215	7,861	6	8	6,036	618	43	3,983	1,920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129	131	-	3	30	1	-	18	-	6	61	12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9,957	10,039	1	195	5,141	1	-	2,322	288	2	675	1,414
인권침해·조작 의혹·확정판결 사건	2,888	3,236	15	1	1,376	2	8	1,259	4	22	418	131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85	4,024	2	7	1,006	2	-	2,067	326	13	288	313
역사적 중요한 사건	202	215	-	-	178	-	-	26	-	-	8	3
3·15의거 사건	492	493	-	9	122	-	-	344	-	-	1	17
기타	2,692	2,606	36	-	8	-	-	-	-	-	2,532	30

주: 1) 조사국에 배정된 사건으로 조사과정 중 사건 분리·병합 등으로 신청 건수와 차이가 있음

2) 취하 및 여순사건 이관 사건 등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과거사정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의 진실 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당초 조사기간은 2024년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 23일 진실화해위원회 제71차 전체위원회

에서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을 의결함에 따라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활동을 할 수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처리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사건의 유형과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겠으나,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부터 2024년 6월말 현재까지 월평균 처리된 사건이 341건⁶⁾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를 토대로 볼 때,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3,751건으로 2024년 6월말 현재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8,144건에 미치지 못하는 바, 진실규명활동 기간 내에 사건이 모두 완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

- 현행법상 추가적인 진실규명활동 기간 연장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1만 2,600건(처리 사건수)/37개월(진실규명활동 개월수)

2. 진화위운영(1031-300)

-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유해발굴지 선정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당초 편성액 대비 상당 규모의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 바, 유해발굴지 선정에 있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조사실 방음벽 설치’ 목적으로 편성된 공사비(420-03목)와 ‘유해발굴 조사검체 보관장비 구매’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자산취득비(430-01목)를 임의적 필요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재정법」과 예산 총칙을 위반하였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 수집자료 CD 제작 및 자료집 발간’ 사업과 ‘한눈에 보는 진실규명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부실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연도 들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지 않은 사례로, 향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화위운영’ 사업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조사 등 진실규명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와 유족 등의 명예회복 및 K-진실화해 모델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 예산현액 73억 200만원 중 45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1,400만원을 불용⁷⁾하였음.

7) 불용사유: ‘집단희생 사건 등 조사’ 미실시에 따른 일반용역비(210-14),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220-01) 및 국외업무여비 등 관련 예산 불용액, 그 밖에 용역계약 체결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진화위운영	7,029	7,029	273	-	-	7,302	4,528	1,260	1,514	3,429
위원회대외홍보	660	660	-	-	-	660	550	81	29	468
진실규명 조사	6,369	6,369	273	-	-	6,642	3,978	1,179	1,485	2,961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나. 유해발굴지 선정에 있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

□ 본 세부사업의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국가차원의 유해 발굴을 통해 한국전쟁기 집단희생 사건 등에 의한 희생자 피해실태 파악과 증거를 확보하여 진상규명 및 유족 해원(解冤)·화해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일반 연구비(260-01목) 집행을 통한 용역 발주 방식으로 수행됨.

□ 2023년도 동 사업은 신규 발굴대상지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액 8억원 중 4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 바, 당초 편성된 예산액 대비 상당 규모의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음.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유해발굴 용역 사업 ¹⁾	800	423	355	18

주: 1) 2023년도 신규 발굴대상지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액(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도에 총 5개 지역 8개소의 신규 발굴지를 선정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⁸⁾ 8개 신규 발굴지 모두 9월 하순 이후 발굴 작업에 착공하였고, 4개소의 유해발굴 사업은 20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202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개소는 2024년도에 들어서야 발굴 작업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실적]

유해발굴지	관련사건	추진경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37-1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기간	'23.9.21.~10.25.
		결과	치아 207점, 유품 57점 발굴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44, 653, 883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3.10.30.~11.24.
		결과	유해 22구, 유품 207점 발굴
충남 서산시 갈산동 176-4	충남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3.12.18.~'24.1.12.
		결과	유해 9구, 유품 67점 발굴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예산 국민보도연맹사건	기간	'23.10.12.~10.17.
		결과	유해·유품 미발굴
경기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35	여주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3.12.03.~22.
		결과	유해·유품 미발굴

8) 2023년도 신규 발굴지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 외에 2022년도 이월사업으로 5개 지역 7개소에 대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음.

유해발굴지	관련사건	추진경과	
전북 군산시 신관동 군산대 공대 2호관	군산 적대세력 희생사건	기간	'24.1.5.~31.
		결과	유해·유품 미발굴(녹슨철제,군용전선확인)
경북 울진군 울진면 고성리 산87	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3.11.19~'24.3.30.
		결과	유해 3구, 유품 100점 발굴
삼척 근덕면 상맹방리 산7	삼척 부역혐의 희생사건	기간	'24.3.13.~3.22.
		결과	유해·유품 미발굴
5개 지역 8개소		치아 207점, 유해 34구, 유품 431점 발굴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게시가 6월 21일에 이루어져 8월 10일부터 다음연도인 2024년 2월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후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계약기간도 2024년 5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토지소유주의 승낙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산림보호구역 고시해제 심의 등 토지 사용에 관한 행정절차 경유의 문제로 유해발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실제로 유해발굴 사업 기본계획에 제시된 유해발굴 대상지(2023.1월),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당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유해발굴지(2023.6월), 2023년 8월 최종 선정되어 발굴 작업이 추진된 유해발굴지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고, 유해발굴지 변동의 주된 사유는 토지사용 미승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유해발굴지 변동 현황]

구 분	유해발굴지	제외 사유
사업 기본계획 (2023.1)	강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7	(유해발굴 실시)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산11	토지사용 미승인
	충남 공주시 옥룡동 산33-7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지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68 (돌고개)	토지사용 미승인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산113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지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우산리 548	토지사용 미승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1503-5 일원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지
입찰 제안요청서 (2023.6)	대전 동구 낭월동 산 4-1	토지사용 미승인
	충남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산11 (떡뱅이굴)	토지사용 미승인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44, 653, 883번지	(유해발굴 실시)
	강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 7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산 168(돌고개)	토지사용 미승인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심리 산 24	토지사용 미승인
	전북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4-6	토지사용 미승인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우산리 548	토지사용 미승인
최종 발굴대상지 (2023.8)	경기 안산시 선감동 37-1	(유해발굴 실시)
	강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7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44,653,883	”
	충남 예산시 오가면 신석리 16-49, 16-29	”
	경기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35	”
	전북 군산시 신관동 군산대	”
	경북 울진군 울진면 고성리 산86	”
	충남 서산시 갈산동 176-4	”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유해발굴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선정한 유해발굴지가 사업추진 단계에서 변동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집행연도 들어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정 지역의 발굴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유해발굴이 이루어진 8개 유해발굴지 중 당초 기본계획(2023.1월)에 제시된 유해발굴지는 1개만이 포함되어 있고, 입찰 제안요청서(2023.6월)에 제시된 유해발굴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개 유해발굴지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측면이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실시한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실태조사(37개의 발굴가능지와 45개의 잠재적 발굴가능지 선정)⁹⁾를 바탕으로 가해주체, 사건의 유형, 발생지역, 희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결을 통해 매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의 유해발굴지를 선정하고 있음.
- 다만, 유해발굴지 선정에 있어 사업의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감축시키지 않는 한 2023년도와 같은 사업기간 연장과 예산 이월이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년도 이월 사업과 당해연도 신규 발굴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른 행정력 부담으로 인하여¹⁰⁾ 집행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9)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10) 2022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이 9월에 유해발굴지 선정과 토지사용 승낙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10월 들어서야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5개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진실화해위원회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조직으로 2025년 5월말까지 진실규명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6개월간 종합 보고서 작성을 거쳐 2025년 11월말까지 존속하게 될 예정인 바, 집행연도 내에 유해발굴 사업 등 과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발굴지 선정에 있어 토지사용 승인이나 행정절차의 충족 여부 등 사업의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¹¹⁾

다. 「국가재정법」과 예산 충칙을 위반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023년도 본 세부사업의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에는 ‘위원회 조사실 방음장비 공사’ 목적으로 공사비(420-03목)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구매’를 위한 6,000만원과 ‘유해발굴 조사검체 보관장비 구매’를 위한 1억 1,000만원 등 자산취득비(430-01목)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 7개소의 유해발굴 사업이 2023년도로 이월되고, 모든 발굴지에 대한 유해발굴이 2023년도 들어서야 착공되었는 바, 2023년도에 전년도 이월 유해발굴 사업과 신규 발굴지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른 행정력 부담도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임.

11) 이와 관련하여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과거사정리법상의 법적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공사비(420-03목) 및 자산취득비(430-01목) 예산 편성 내역]

(단위:천원)

구분	편성내역	
	내용	금액
공사비(420-03목)	위원회 조사실 방음장비 공사	20,000
자산취득비(431-01목)	위원회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구매	60,000
	유배발굴 조사검체 보관장비 구매	110,000
	소계	170,000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2023회계연도 공사비(420-03목)와 자산취득비(430-01목)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임의적 필요에 따라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420-03목) 및 자산취득비(430-01목) 예산 집행 내역]

(단위:천원)

구분	집행내역		
	집행일자	내용	금액
공사비 (420-03목)	3.31.	위원회 조사실 방음벽 설치	12,509
	3.31.	위원회 사무환경 조성(전기배선 및 전등 설치 등)	1,377
	3.31.	위원회 사무환경 조성(비상문 등 이전 및 유리칸막이 설치 등)	1,485
	3.31.	위원회 사무환경 조성(민원실 등 재배치)	1,560
	3.31.	위원회 사무환경 조성(민원실 및 3·15의거과 좌석재배치 네트워크 설치)	1,320
	소계		18,251
자산취득비 (431-01목)	5.19.	언론홍보용 카메라 구입(카메라 부속물품 구입)	2,000
	6. 7.	언론홍보용 카메라 구입(조달수수료 지급)	66
	6.12.	언론홍보용 카메라 구입(디지털 카메라 구입)	12,910
	12.28.	유해검체 보관용 제습함 구입	10,890
	12.28.	위원회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구매 설치	36,756
	소계		62,622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사비(420-03목)는 당초 편성 목적인 ‘위원회 조사실 방음벽 설치’에 본예산액 2,000만원 중 1,250만원(62.5%)이 집행되었으며, 자산취득비(430-01목)는 당초 편성 목적인 ‘위원회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구매’에 본예산액 6,000만원 중 3,600만원(60%)이, ‘유해발굴 조사검체 보관장비 구매’에는 본예산액 1억 1,000만원 중 1,100만원(10%)이 각각 집행되었음.

□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위원회 조사실 방음벽 설치’ 외에 ‘위원회 사무환경 조성’ 목적으로 공사비(420-03목) 5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유해발굴 조사검체 보관장비 구매’ 및 ‘위원회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구매’ 외에 ‘언론홍보용 카메라 구입’ 목적으로 자산취득비(430-01목) 1,500만원을 사용하였음.

□ 본 세부사업의 공사비(420-03목)와 자산취득비(430-01목)가 집행 목적을 특정하여 편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¹²⁾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¹³⁾

□ 특히 본 세부사업에 편성된 공사비(420-03목)를 ‘위원회 사무환경

1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에 관한 정부 지침(「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에 자산취득비(430-01목)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요 사업 경비를 편성한 본 세부사업의 공사비(420-03목)도 경비의 성질이 이와 유사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조성' 공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성 사업 목적에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¹⁴⁾ 이는 입법과목에 해당하는 '항'(프로그램)을 달리 하는 사업 간에 예산을 임의로 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국가재정법」 제47조¹⁵⁾와 2023년도 예산 총칙 제10조¹⁶⁾에도 위배되는 것임.¹⁷⁾

14) 진실화해위원회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한 '진화위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 7002-250)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 기본경비 사업은 본 세부사업(사업코드: 1031-300)과 입법과목인 '항'(프로그램)을 달리하는 사업임.

15)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2023년도 예산 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범정보상금, 범정보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총칙을 위반하여 ‘진화위 운영’ 세부사업의 공사비(420-03목)와 자산취득비(430-01목)를 임의적 필요에 따라 당초 편성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 바, 향후 유사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라. 부실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한 후 집행연도 들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도에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을 통해 1) ‘진실화해위원회 수집자료 CD 제작 및 자료집 발간’ 사업, 2) ‘한눈에 보는 진실규명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었음.

□ ‘진실화해위원회 수집자료 CD 제작 및 자료집 발간’ 사업은 진실화해위원회 1기 및 2기 활동 기간에 수집한 중요자료 등을 자료집으로 발간하려는 것으로 CD 및 자료집 수록 내용 검토 및 회의 5,000만원, 수집자료 해제 7,000만원, 원문 편집 및 주요 인명 삭제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② (생략)

17) 진실화해위원회는 ‘진화위운영’ 세부사업에 편성된 공사비(420-03목)를 ‘위원회 사무환경 조성’ 목적으로 집행하면서 이용(移用)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위원회 사무환경 조성’은 2023년도 예산 총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移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移用) 절차에 따른 예산의 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8,000만원, 주요 자료 책자 발간 1억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한눈에 보는 진실규명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GIS 기반 정보 공개를 위한 플랫폼 구축 작업, 장비 도입, 자료 입력을 내용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진실화해위원회 수집자료 CD 제작 등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편성예산	
		비목	금액
진실화해위원회 수집자료 CD 제작 및 자료집 발간	CD 및 자료집 수록 내용 검토(전문가 자문 등) 및 회의	일반수용비(210-01목)	50
	수집자료 해제	일반용역비(210-14목)	70
	CD 발간을 위한 원문 편집 및 주요 인명 삭제	일반용역비(210-14목)	80
	주요 자료 책자 발간	일반수용비(210-01목)	100
	소 계		300
한눈에 보는 진실규명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GIS 기반 정보 공개를 위한 플랫폼 구축 작업, 장비 도입, 자료 입력	일반용역비(210-14목)	300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도에 이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집행연도 들어 ‘진실화해위원회 수집자료 CD 제작 및 자료집 발간’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기록원이 동 기록원에 이관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자료를 활용한 자료집 발간

은 공공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점 등¹⁸⁾을 고려할 때, 당시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눈에 보는 진실규명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진실규명에 주력해야 할 시점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추후 재단이 설립될 경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집행연도 들어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필요하게 될 수 있으나, 2023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 수집자료 CD 제작 및 자료집 발간’ 사업과 ‘한눈에 보는 진실규명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진실화해위원회 수집자료 CD 제작 및 자료집 발간 사업’의 경우 부실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제출한 후 집행연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제반 사정을 인지한 사례에 해당하고, ‘한눈에 보는 진실규명 정보공개 플랫폼’ 사업의 경우는 예산안 편성 및 심의 당시와 다른 집행기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함.

18) 그 밖에 조사관들이 조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수집대상 자료에 대한 선별·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자료집 발간 및 배포시 검찰 등 다른 기관이 제공한 수집자료는 원자료 생산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진술자료는 진술자 개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및 집행 행태는 예산 불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진화위기기본경비(7002-250)

- 토론회 행사와 관련하여 회의장 대관료, 연회장 사용료, 연회장 식음료비를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하여 예산을 비목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 바, 향후 예산 비목의 용도를 위반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화위기기본경비’는 회의 개최, 정기 조사보고서 발간, 조사업무 수행 지원, 사무보조인력 운영, 기록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 예산현액 54억 7,400만원 중 53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¹⁹⁾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진화위기기본경비	5,954	5,954	-	△480	-	5,474	5,391	21	62	6,800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¹⁹⁾ 일반연구비(260-01목) 용약 계약 1건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나. 예산 비목의 용도를 위반한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정부 지침²⁰⁾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과목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나열되어 있고,²¹⁾ 자산취득비, 공사비,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8월 31일 및 9월 25일자로 ‘납북 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토론회’ 행사와 관련한 회의장 대관료를 일반수용비(210-01목)로, 2023년 12월 26일자로 ‘전남지역 군경 및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토론회’ 행사와 관련한 연회장 사용료, 연회장 식음료비를 일반수용비(210-01목)로 각각 집행하였는 바, 이는 예산 비목의 용도를 벗어난 집행(약 78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에 관한 정부 지침²²⁾에 따르면, 각종 시험 및 교육을 위한 교실 임차,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차료(210-07목)로 편성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 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추진비(240-01목)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20)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1)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공고료 및 광고료’,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일반수용비(210-01목) 용도 외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집행일	비목	지급액	지급업체	지급내역
8.31.	일반수용비 (210-01목)	330	한국언론진흥재단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토론회 회의장 대관(계약금)
9.25.		2,178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토론회 회의장 대관(잔금)
12.26.		3,960	□□관광개발	전남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토론회 연회장 사용료
		1,310		전남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토론회 연회장 식음료비
합계		7,778	-	-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토론회 행사와 관련한 회의장 또는 연회장 사용에 관한 대가는 임차료(210-07목)로, 연회장 식음료비는 사업추진비(240-01목)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 예산의 비목은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하여 범위를 정함으로써 지출 항목과 지출 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예산 제도로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지출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담보하려는 예산 비목 운영의 제도상 취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예산 비목의 용도를 벗어난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